



서울물재생시설공단



수 신 물재생운영본부장

(경유)

제 목 센터별 인화성가스(소화가스) 성분분석 협조 요청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(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) 제1항제2호 관련입니다.
2. 위 법적근거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생산하는 인화성가스(소화가스)에 대한 성분분석을 요청하며, 그 결과에 따라 각 센터별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개정하고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자 합니다.

| 구 분 | 현 재 | 개정(안) |
|------|---|---|
| 탄천센터 | 소화가스 : 탈황 전 | 소화가스 : 탈황 전, 후(2개소) |
| 서남센터 | 소화가스(1처리장) : 탈황 전, 후 소화가스(2처리장) : 탈황 전, 후 소화가스(시설현대화) : 탈황 전, 후 | 소화가스(1처리장) : 탈황 전, 후 소화가스(2처리장) : 탈황 전, 후 소화가스(시설현대화) : 탈황 전, 후 (6개소-1처리장 탈황 후는 검토 후 시행) |

. 끝.

경영기술본부장

담당 전성두 안전관리팀장 박찬윤 기술처장 권형택 경영기술본부장 06/01 박동석

협조자 담당 김재웅

시행 기술처-2799 (2023. 6. 1.) 접수 ()

우 063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(서울물재생시설공단 / www.swr.or.kr
본부)

전화 02-3410-9762 /전송 02-3410-9769 / sungdu76@swr.or.kr / 공개